

직무발명보상제도 (6)

직무발명보상규정(사례 II)

- 본 사례는 우리나라 민간 기업체중 직무발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의 예시입니다.
- 본 사례를 표본으로 삼아 귀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직무발명보상지침

제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발명활동 및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해 창출된 지적재산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의 발전과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회사의 직무발명에 관한 관리, 운영 및 보상 등의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 (권리승계)

① "직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 고안 또는 창작(이하 "발명"이라 함)한 지적창작물이 성질상 회사의 사업 또는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자체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업무발명"이라 함은 종업원이 발명한 지적창작물이 종업원의 직무에는 속하지 않으나 회사의 사업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단, 사업범위라 함은 회사 정관에 명시한 기본사업 뿐만이 아니라 기타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자유발명"이라 함은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발명 또는 업무발명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지적창작물을 말한다.

④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을 말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종업원이 이를 회사에 승계한 경우에도 발명자에 해당한다.

⑤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인사규정에 따라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권리"라 함은 출원 또는 등록의 신청을 할 권리와 발생된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⑦ "출원"이라 함은 특허,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에 대한 출원과 컴퓨터프로그램 및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대한 등록의 신청을 포함한다.

⑧ "모인"이라 함은 남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꾸미어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권리승계)

①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한 지적창작물 및 그 권리를 승계한다. 단, 분쟁중에 있거나 회사가

승계를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직무발명이 종업원 이외의 제3자와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회사는 업무발명이나 자유발명에 대하여 종업원의 양도신청이 있을 경우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승계한다.

④ 회사는 관계사의 임직원이 자유의사에 따라 관계사를 통하여 발명의 승계를 요청할 경우 “관계사 자유발명 처리기준”에 의거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승계하고, 회사의 발명자와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토록 한다. 단, 이에 따른 제세금 문제는 관계사의 임직원이 부담한다.

제5조 (보상 및 포상)

① 회사는 제4조에 의하여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본 지침의 제3장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및 포상을 실시한다. 단, 그 세부내용은 각 보상별 실시기준에 따른다.

② 직무발명 보상금액에 대한 결정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 또는 그 위임권자(이하 “대표이사”라 함)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고, 포상의 경우는 회사의 상벌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관부서 및 운영)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는 지적재산권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지적재산권부서(이하 “지적재산부서”라 함)가 그 운영을 주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 또는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직무발명의 신고 및 출원

제7조 (신고)

①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직무발명신

고서(“출원관리지침”의 별지서식 제1호)에 그 발명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 지체없이 소속 부서장 또는 그 위임권자(이하 “소속부서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업무발명이나 자유발명(관계사 자유발명 포함)을 한 종업원도 전항에 준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③ 소속 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당해 발명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승계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적재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승계의 결정)

① 지적재산부서는 제7조에 의해 신고된 발명에 대하여 특허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여 승계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있어 지적재산부서는 필요에 따라 위원회 및 소관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함)의 자문 및 당해 발명자, 관계자의 보충설명 청취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종업원의 우선협약)

발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신고된 업무발명 또는 자유발명(관계사 자유발명 포함)을 심사하여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당해 발명의 양도여부를 제3자에 우선하여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양도의무)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신고된 발명을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발명자는 그 권리를 회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원)

제8조에 의하여 발명의 권리를 회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적재산권부서는 당해 권리의 승계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이를 “지적재산 출원·

등록관리지침”에 의거 사용자의 명의로 출원한다.

제12조 (출원 및 양도의 제한)

① 발명자는 제4조에 의하여 회사가 당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을 것을 결정하였거나 제11조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특허를 임의로 출원하거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직무발명을 출원함으로써 회사의 비밀이나 KNOW-HOW가 공개되어 회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적재산부서가 출원 등을 보류하거나 취하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하여 출원을 제한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명자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출원시의 보상액내에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이후 출원이 이루어질 경우는 그 차액만큼만 보상토록 한다.

제13조 (통지)

지적재산권부서는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처리결과를 당해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제13조에 의해 통지를 받은 종업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적재산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③ 지적재산부서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조사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결정을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결과 위원회가 당해 발명을 승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적재산부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하여야 하며, 재심의 결과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상 및 포상

제15조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각항과 같이 지급한다. 단, 세부 평가방법 및 보상금액지급기준은 각각에 대한 실시기준에 따른다.

① 출원보상금

제11조에 의하여 발명을 회사명으로 출원한 경우 회사는 발명자에게 국내 및 국외 출원에 대하여 각각 출원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유사발명을 병합하여 출원한 경우는 공동발명으로 취급토록 한다.

② 등록보상금

국내 출원한 발명이 등록을 받았을 경우 또는 해외 출원한 발명이 최초 일국에서 등록을 받았을 경우 회사는 당해 종업원에게 등록보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단, 무심사 등록제도를 채택하는 국가에 등록된 발명에 대해서는 상기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실시보상금

등록된 특허가 회사의 제품에 적용되어 그 실시결과가 회사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하였을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지적재산부서 평가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재가를 받아 실시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처분보상금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실시를 허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수익금의 10%의 범위내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유효특허보상금

회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권리가 타사에 대한 클레임제기 및 신규 또는 재계약 협상에서 로열티 수입이나 절감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효특허 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방어보상금

1. 회사는 종업원등이 경영에 장애가 되는 타인 및 타사의 발명에 대하여 공개자료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하여 당해 특허의 권리취득을 저지한 경우에는 방어보상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상기 1호에 있어 실시교섭을 하고 회사가 당해 발명을 실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공지자료의 제공자에게 실시보상금에 준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회사는 타인 및 타사로부터의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을 받은 경우에 종업원 등이 이에 대한 의견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회사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도 제1호와 같이 방어보상금을 지급한다.

⑦ 정보제출보상금

회사의 경영활동에 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타인 및 타사 발명의 출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관련정보를 제출한 경우 정보제출보상금을 지급한다.

⑧ 침해적발보상금

회사는 종업원이 국내·외의 타인 및 타사가 회사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을 경우 침해적발보상금을 지급한다.

⑨ 특별보상금

회사는 세계적인 신기술, 신상품에 해당하는 획기적인 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하여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특별히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해외근무자 보상금)

해외연구소 및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자 또는 현지 채용인의 발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위원회에서 합의된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계약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 (보상금의 지분지급 및 제한)

①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불한다.

② 회사는 발명 등의 권리화 과정에서의 협력자나 실시·처분(타사로의 실시권의 설정, 양도) 등에 의해 수익을 얻었을 경우, 당해 발명등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공헌도 등을 감안하여 협력자에 대하여 당해 발명 등의 보상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60범위에서 심의회의 사정에 의거 협력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③ 모인발명의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퇴직 및 사망시의 보상)

① 종업원이 퇴직 혹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도 제15조, 제16조에 의한 대가를 받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② 발명을 한 종업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은 청구에 의해 실시하며, 청구가능 시한은 회사의 회계처리 규정상의 예수금처리 기준에 따라 발생후 3년으로 한다.

제19조 (보상금의 과세)

본 지침에 의해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한 과세처리는 정부의 세법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상은 재직자, 퇴직자 모두 비과세기타 소득으로 보아 전액을 지급한다.
2.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은 재직자의 경우는 급여외근로소득으로 5%의 세금을 부과하나 회계시스템 상에서 역산처리하여 전액 지급하고, 퇴직자의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25%의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20조 (보상금의 불 반환)

종업원 및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당해

권리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특허등이 모인에 의하여 출원 또는 등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직무발명 포상)

직무발명 포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지적재산부서에서 선정 또는 추천하여 시행하거나, 회사의 상별규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단, 동일한 공적으로 사내 포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당해 연도에 활발한 발명 또는 관리활동으로 회사의 경영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및 단체
2. 제15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중 포상대상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
3. 상기 각호외에 지적재산관리 활동과 관련하여 포상할 자격이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제22조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① 보상받을 권리를 가진자가 본 지침의 운영에 있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은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지적재산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재산부서는 사실여부의 진상을 조사하여 조치하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진상조사 및 심의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대표이사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제 4 장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제23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사는 직무발명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변리사등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지적재산부서 담당임원이 되고, 위원은 지적재산부서의 부서장 및 간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의 조사 및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사업장별로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관 전문위원은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며 이는 지적재산부서의 간부로 한다.

제25조 (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의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결정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지적재산권의 승계 여부와 직무발명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 양수·양도, 실시권 허여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보상지침의 개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련된 종업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

제27조 (위원회소집 및 의사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④ 필요시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28조 (의견청취)

직무발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명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9조 (비밀유지)

① 발명자 또는 발명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자는 그 내용에 대한 기밀을 보호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은 업무에 관련된 발명을 하여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발명자의 협력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판 또는 국내·외 소송등 분쟁이 제기될 때에는 이의 해결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회사가 승계한 발명의 권리 확보 또는 처분 및 실시 등에 있어서 회사 또는 실시허여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권리의 발명자는 권리의 실시나 실시여부에 관한 사실 및 계획에 관하여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 (제안의 직무발명으로서의 변경)

① 제안의 내용이 우수하여 발명 또는 고안의 수준에 해당될 경우 제안심의회는 이를 지적재산부서에

직무발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제안이 직무발명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2조 (시상 및 인사고과 반영)

① 직무발명 포상 및 보상금 지급은 사무식 또는 정례조회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리 시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 지급 및 포상을 수상한 경우 회사의 인사 또는 상벌규정에 따라 승격 또는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33조 (손해배상)

① 종업원은 재직중에 완성한 발명을 비익하여 퇴직 후에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 및 특허권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완성한 발명에 대하여는 회사가 승계할 권리를 갖는다.

③ 상기 제1항, 제2항 및 본 지침에서 정하는 종업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의 신용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당해 종업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4조 (준용)

① 본 지침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권리 및 이외의 신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본 지침을 폭넓게 준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본 지침은 19〇〇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특2000-05